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간병의 범위 등)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·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. 다만, 요양 중인 피공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

② 간병은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·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.

1.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
2.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3.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4.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
5.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

6.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
7.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·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

8.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
9.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
10. 그 밖에 부상·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

③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

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부대경비는 보호자등이 실제 간병을 실시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일당 2만원으로 한다.

⑤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.

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

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중학생 이상 또는 성년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 다만,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.

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학교장, 공제회 또는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무
2. 법 제1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
3.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
4.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5. 법 제37조에 따른 장애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6. 법 제38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7. 법 제39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8. 법 제40조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
9. 법 제40조의2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

10.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

11.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

12.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

13. 법 제48조에 따른 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무

14.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

15.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

16. 법 제67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

제17조제1항에 따른 [별표 4]의 “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<개정 2010.7.12>

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구분	지급대상	지급기준
상시간병급여 (常時看病給與)	1. 신경계통의 기능,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. 두 눈·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	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1조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4조의2(간병의 범위 등)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·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. 다만, 요양 중인 피공제자가 중환자실이 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 ② 간병은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·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. 1.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.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.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

- 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4.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
 5.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
 6.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 7.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·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
 8.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 9.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

제19조의2(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)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	10. 그 밖에 부상·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③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부대경비는 보호자등이 실제 간병을 실시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일당 2만원으로 한다.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⑥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.		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,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④ (생략) <신설>	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.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중학생 이상 또는 성년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 다만,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. <삭제> ④ (현행과 같음) 제3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학교장, 공제회 또는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
---	---	--	--	---

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8조제1항제2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

3.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

4.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
5. 법 제3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
6. 법 제38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
7. 법 제39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
8. 법 제40조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

9. 법 제40조의2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

10.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

11.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

12.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

13. 법 제48조에 따른 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무

14.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

15.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

16. 법 제67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